

## 출자전환에 의한 유상증자 공고

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하여 2024년 06월 1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차입금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기에, 상법 제41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1,566주
2. 1주당 액면가액 : 5,000원
3. 신주의 발행가액 : 60,000원
4. 증자방식 : 차입금 출자전환에 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
5. 신주인수방법 : 보통주식 총 1,566주를 정관 제11조 2항의 4에 의해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하고, 채권자는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며, 잔액은 채권자에게 상환하도록 한다.  
(채권자 : ㈜크리액티브헬스)
6. 주금납입방법 : 신주발행으로 발생하는 채권자의 납입채무를 기지급한 차입금으로 전부 상계함
7. 주금납입일 : 2024년 06월 25일
8. 기타 :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.

2024년 06월 11일

**주식회사 슈퍼노바바이오**  
대표이사 임 형 우 (직인생략)